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규정

<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 윤리규정 >

< 논문투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

< 논문심사규정 >

< 논문 표절규정 >

<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는 1명의 편집위원장, 5인 이내의 편집이사 및 2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편집위원장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선정은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논문집의 질적 수준과 편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편집위원장은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① 사회적 경제와 정책 및 국제개발 분야에 관련한 분야의 학술적 실적이 있어야 하며,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 ② 세부 연구 분야 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③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게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 ④ 특정 학교나 기관에 편집위원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기준) 본 학술지 편집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1. 박사학위 소지자
 - 2.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자
- ②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선임되어 활동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5편이상의 논문을 (주 저자 기준) 발표한 연구자 이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제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업무 및 운영

제5조(업무) 본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편집 및 발간
- ② 기타 본 편집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운영) ① 편집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② 본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선임·위촉하고 심사평을 근거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의소집) ① 본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소집이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이사와 협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2011. 3. 1>

-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15. 9. 1>

- 1.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

- 1.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1>

- 1. 본 규정은 2019년 2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윤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의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에 관련된 윤리확립과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윤리성) ① 연구자는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을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연구 윤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술지 투고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구성)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개발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및 국제개발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활동에 모범적인 교내·외 각 분야의 전문인사 가운데 국제개발연구소장이 위촉하며, 본교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아닌 분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조사대상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연구의 윤리성 확보에 관한 사항
- ② 연구 결과의 진실성 확립에 관한 사항
- ③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 ④ 연구윤리 규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특별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사항 발생 시 또는 이와 관련된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특별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활동

제8조(제보의 접수) ① 연구윤리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제보는 국제개발연구소의 임원에게 실명으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인 경우에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제목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없는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요구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후속조치

제11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거나 인지,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된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후속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

1. 조사결과 및 견책 서한의 발송
 2. 연구부정 행위 논문의 게재 불허
 3. 이미 게재된 논문은 논문 목록에서 삭제
 4. 게재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5. 기타 연구윤리 확립에 필요한 조치
- ② 제①항 제4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투고논문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편집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3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무혐의로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 중,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2011. 3. 1>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15. 9. 1>

1.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 개정하고,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

1.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 개정하고,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

1. 본 규정은 2019년 2월 1일 개정하고,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

1. 본 규정은 2019년 5월 2일 개정하고,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 논문투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원고 투고에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 투고의 자격 및 조건

제2조(논문투고의 요건) ① 원고는 사회적경제와 국제개발과 관련된 학문이나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한다.

②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이 아니어야 한다.

③ 국문 논문과 영문 논문에 한해서만 투고가 가능하다.

제3조(투고자격) ①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는 자는 주저자를 기준으로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 한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본 연구지의 질적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투고자격의 적용을 받지 않고 투고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논문의 투고

제4조(투고방법) 논문 투고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①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본 연구지의 편집규정에 따른 편집결과 A4 20매 내로 한다. 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제 9조에 따른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논문제목, 성명,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필요한 경우)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 색인의 DB를 위하여 논문의 주제어(국문 및 영문)를 5개 이내로 기재한다.

④ 온라인투고시스템 투고시 학술원문제공동의 및 KCI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제5조(원고 편집 방법)

① 원고용지 편집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용지 종류	종류	사용자정의	여백	왼쪽	0	글꼴	신명조
	폭	174		오른쪽	0	크기	10
	길이	250				장평	100
용지여백	위쪽	25	간격	줄간격	180	자간	0
	아래쪽	25		문단위	0		
	왼쪽	25				문단아래	0
	오른쪽	25					
	머리말	10	첫째줄	들어쓰기	10		
	꼬리말	15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날말간격	0		
내 용	글자 크기	글자 속성	정렬방식	비 고			
제목	20	진하게	가운데				
소제목	14	진하게	가운데				
영문제목	14	진하게	가운데				
필자(소속, 직위)	11	진하게	가운데				
영문초록	10	보통	양쪽혼합				
I.	12	진하게	가운데				
1.	12	진하게	양쪽혼합				
1) 본문	10	보통	양쪽혼합				
참고문헌	10	보통	양쪽혼합	여백(왼0, 오른0) 내어쓰기 25 줄간격 160%			
각주	9	보통	양쪽혼합	줄간격 130%			

- ② 본문에서 목차 단위의 표기는 I., 1., 1), (1), ①의 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목 위, 아래 한 행씩을 띄어준다.
- ③ 본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자를 쓸 수 있으며, 기타의 외래어는 첫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옆에 괄호 속에 부기한다.
- ④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글자모양은 신명조 10pt로 한다. 국문초록은 800자(공백 포함) 내외, 영문초록은 300단어 내외로 한다.
- ⑤ 표와 그림을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그리고 주와 출처를 표 또는 그림 아래 부분에 차례로 제시한다.

제6조(본문 주) 본문 주는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한다.

- ① 본문과 관련되는 저술을 소개하는 각주는 본문 내에서 해당되는 곳에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괄호에 담는다. 예 : (최영출, 2010: 150), (송백석·곽진오, 2010: 110).
- ② ①항의 요령에서 본문에 저자나 출판년도가 언급되었을 때 또는 페이지의 제시가 불필요한 때에는 그 해당부분을 빼도록 한다. 예 : 김학실(2009).
- ③ 외국 저자의 이름을 원어로 표기하거나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첫번에 한하여 현지발음대로 표기하여 괄호 안에 담고, 그 이후의 것에는 한글 표기만 한다. 예 : 파슨스

(Parsons, 1949)., 또는 Parsons(1949).

- ④ 본문과 관련은 되지만 본문에 들어갈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서 언급이 필요한 경우나 재인용의 경우 원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주로써 처리한다. 단, 각주는 논문 단위로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제7조(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아래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② 참고문헌은 한국어 문헌을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③ 각각의 참고문헌은 다음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서적 : 박진도(2011).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서울: 교우사.

김태성·김진수(2003).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최영출·김병식·김보흠·배정환·안성호(2006).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서울: 대영문화사.

Bell, Daniel(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논문 : 장우진(2010). “부동산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 모형”, 「한국지적학회지」 26(1), pp.87-108

장우진·오승석(2010). “조직성격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진단”, 「정책개발연구」 10(2), pp.1-30.

네모토 마사쓰구(2009). “지방정부 수준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 자율성과 개방성에 의한 한·일 교류의 사례분석”,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Alber, J.(1995). “A Framwork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rvic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5(2), pp.131-149.

Anttonen, Anneli & Jorma Sipilä(1996). “European Social Care Services: Is it Possible to Identify Model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2), pp.87-100.

역서 : 박현수 역(1991). 「거대한 변환 : 우리 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 Karl Polanyi(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서울: 민음사.

인터넷 자료: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http://www.ssri21.or.kr/>). (검색일: 2011.01.01.).

제4장 원고 접수, 게재 기타

제8조(원고의 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심사 원고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https://ssri21.jams.or.kr>)을 통하여 접수한다

- 제9조(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 투고시 심사료 60,000원을 심사료 지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논문에 사사를 붙이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A4 용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페이지당 20,000원의 초과게재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심사료와 게재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호로 이월하거나 또는 발간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게재 확정 및 유사도검사) ① 논문심사를 거쳐서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 게재가로 평가된 논문의 투고자는 최종논문과 표절방지시스템(한국 학술지 인용색인 논문 유사도 검사)을 거친 확인서를 첨부하여 최종원고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한다.
- ②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 제11조(논문의 이월게재)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의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방침에 따라 이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 ② 이월은 최종 게재확정 일자 순에 의한다.

제12조(논문게재제한) 본 학술지는 본교에 소속된 구성원의 논문인 경우 전체 논문 편수와 관계없이 매 호 2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학술지 발간 예정일자) ① 학술지는 1년에 4회 발간하며 발간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발간일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 ②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획논문을 발간하기 위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특별호에 발간하는 논문도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되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논문의 저자는 게재가 결정되면 최종논문과 함께 저작권 동의에 대한 정해진 양식(학술논문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을 제출한다.

부 칙 <2011. 3. 1>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15. 9. 1>

1.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 개정하고,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31>

1. 본 규정은 2016년 1월 3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

1. 본 규정은 2016년 8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1>

1.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

1.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1>

1. 본 규정은 2019년 2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

1. 본 규정은 2019년 5월 2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논문심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위원 위촉, 심사 및 판정

제2조(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과 편집이사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②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③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명의 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논문심사서, 심사평)에 따라 심사한다.

제3조(심사절차) ①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하고 논문심사서 및 심사평을 제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심사결과 통보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판정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논문심사는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다음의 각항에 해당한다.

1. 주제의 학문적 중요성과 독창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연구결과의 타당성
4. 논문의 체계와 전개의 논리성
5. 국·영문 초록의 내용 반영도와 정확도
6. 선행연구의 검토 정도
7. 연구 결과의 학문적 또는 실용적 기여도
8. 논문작성요령의 준수 여부
9. 참고문헌의 정확성
10.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②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본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판정하는 경우에는 본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판정기준) ①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 한다.

②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논문심사 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논문심사결과				판정
○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	□	게재가능	
○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최종 결과 결정)
○	○	×	수정후게재	
○	□	□	수정후게재	
□	□	□	수정후게재	
○	□	△	수정후재심사	
□	□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고, △ 수정후재심사는 수정후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재심 의뢰하여, 최종결과에 적어도 게재가능이 2개 이상인 경우 게재 가능)
○	□	×	수정후재심사	
□	□	×	수정후재심사	
○	△	△	수정후재심사	
○	△	×	수정후재심사	
□	△	△	수정후재심사	
□	△	×	수정후재심사	
△	△	△	수정후재심사	
△	△	×	수정후재심사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주)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제6조(익명성 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투고자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개입)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 ①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집이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심사위원 교체와 재심사 조치 등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재신청)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 및 처음 투고한 년, 월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때 3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4장 표절

제9조(표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윤리규정’과 ‘논문 표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2011. 3. 1>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15. 9. 1>

1.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 개정하고,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

1.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 개정하고,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

1. 본 규정은 2019년 2월 1일 개정하고,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

1. 본 규정은 2019년 5월 2일 개정하고,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 논문 표절규정 >

제1조(정의) 본 학술지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술지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 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①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①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온라인에서 논문삭제
3.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컷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에 표절사실을 공시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기타 본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복게재) 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중복게재도 제재대상이다.

② 제재는 표절규정을 준용한다. 단, 규정개정 이전의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는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2011. 3. 1>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15. 9. 1>

1.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 개정하고,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

1.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 개정하고,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

1. 본 규정은 2019년 2월 1일 개정하고,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

1. 본 규정은 2019년 5월 2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